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7. 11.>

관리선의 규모(제21조제1항 관련)

1. 먼허어업

어업의 종류	관리선의 규모
가. 정치망어업	총톤수 30톤 미만인 동력어선
나. 마을어업	총톤수 20톤 미만인 동력어선

2. 구획어업

어업의 종류	관리선의 규모
가. 건강망어업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총톤수의 동력어선
나. 건망어업	
다. 들망어업	
라. 선인망어업	
마. 승망류어업	
바. 안강망어업	
사. 장망류어업	
아. 지인망어업	
자. 해선망어업	